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실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 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 대학교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 장비 · 연구 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 실습실 · 준비실 · 기기실 등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대표자인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전문가로서 연구실안전 법령 제10조 4항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이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지도 · 관리 · 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본 대학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 대학생 ·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 평가를 말한다.
9.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 · 기구 · 장비 · 위험장소 ·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 · 기호 · 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라 함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한다.

13. “과학기술분야”란 연구, 실습, 실험과 관련된 시설·장비·기계기구·설비를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분야로 교육부 전공분류체계 기준에 따른다.
14.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자를 말한다.
1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호장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체 또는 기계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7. <삭제>
18. “대리자”라 함은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정된 사람을 ---(단, 출산 휴가 시 90일)
19. “연구실안전관리사”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제4조(안전관리 조직) 본 대학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며, 사고 대응, 조사 등을 위하여 본 대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T/F (이하 “연구실비상대응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 연구주체의 장은 본 대학교의 연구실 대표자로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연구실책임자 지정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3.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계상 및 예산의 반영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실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6.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주기·시기별 건강검진 실시
7.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 공표
8.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연구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9.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행정부서 장관에게 보고
10.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보고서에 준해 관련 행정부서 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
11.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부서 장관에게 보고
12.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 가입
13.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 지정
1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

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16.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 보호

제6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본 대학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겸임), 미래산업융합대학장, 생명환경공학 전공주임, 화학전공주임, 원예생명조경학과장, 식품공학전공주임, 식품영양학전공주임, 패션산업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진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제8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에서 연구 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분석 실시 후 연구주체의 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5.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④ 연구실 내 안전확보를 위해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실시
5.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나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의 조치
6.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④ 연구실안전교육·훈련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연구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신규교육: 반기별, 정기교육: 온라인 및 집체교육: 반기별, 특별교육: 필요시 실시)

- ⑤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신규 교육내용과 연구실안전교육·훈련참석자명부[별표2]에 준한 기록 또는 이수증명서, 이수내역서 등을 작성·보관 한다.
- ⑦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중 정기교육은 전문적인 온라인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이수과목 별 선택, 필수 선택은 학과별 교육프로그램에 따른다.
- ⑧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교육·훈련 결과에 대하여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연구실안전법이 정한 바와 같다.
- 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율에 따라 학과 실험실습비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한다.
- ④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2의1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 활동종사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⑤ 본 대학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⑥ 본 대학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연구 활동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한다.
- ⑦ 본 대학교는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검진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행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3조(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3]에 준한 연구실안전점검일지를 연구실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실험전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과, 정기점검의 실시내용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 특별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시요건과, 정밀안전진단 · 특별안전점검의 실시내용은 연구실안전법에 정한 바에 준한다.

③ 연구실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실시한다.

제15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연구실안전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연구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등급 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 연구실인 연구실에 대하여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착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수 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알린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제16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본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4.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수수료
6.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7.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8.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9. 강사료 및 전문가활용비
10. 여비 및 회의비
11. 설비 안전검사비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비용
14.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본 대학교 내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습실 이용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기타 필요 비용을 자체 수익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습실 이용자가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보상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긴급대처방안 및 사고조사

제18조(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연구실안전관리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별표5]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 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장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20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 소속기관명, 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배치도 등 연구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해당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실시한다.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유해인자에 의한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 처리 절차 등을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3조(보고 및 보고서 관리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이하 “보고서”라 한다.)[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내]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 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보존할 수 있다.
-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24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해·위험기계기구에는 작업방법 또는 작동요령을 부착하여 유사시 발생할 위험에 대처한다.

제25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화학/화공, 생명, 식품/공학, 패션, 컴퓨터학과 등이 적절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학과별로 관리한다.

③ 연구실에는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본 규정은 연구실안전법이 정한 내용을 준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06 제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 14, 16, 17, 23, 24, 30, 33, 38, 40조 개정, 제3조 17, 18, 19호 신설, 제32조 4, 5호 신설, 별표 제2호 신설 <2008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32조 개정<20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1호, 제3조제17호, 제3조제19호, 제6조, 제9조, 제38조,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5호> 개정 <2011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제1호 개정 <2013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제7호, 제9호 및 제10호, 제16조제3호, 제17조 및 동조제6호, 제9호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개정 <2014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전면 개정, <별표 제1호> 내지 <별표 제8호> 신설, <별표 제2호> 내지 <별표 제4호>를 <별표 제9호> 내지 <별표 제11호>로 변경, <별표 제1호>를 <별지서식 제1호>로 변경, <별표 제5호>를 <별지서식 제2호>로 변경 <2015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의2 삭제 <2016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별표1] 내지 [별표5] 신설 <2017 제21차 교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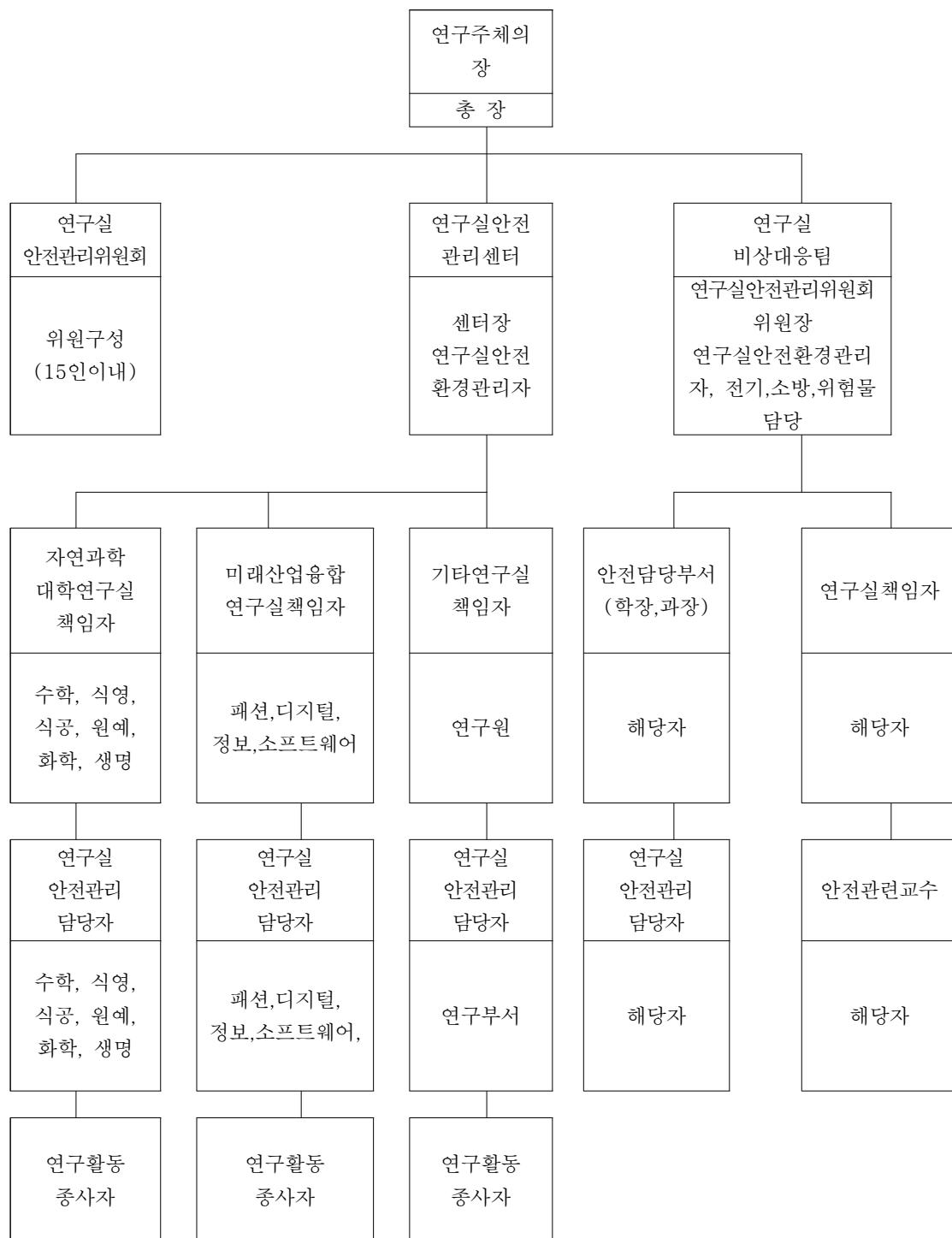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8호, 제5조, 제5조 제14호, 제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개정, [별표4] 삭제 <2019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13호 개정, 제3조 제17호 삭제, 제3조 제18호 개정, 제3조 제19호 신설, 제5조, 제5조 제10호 및 제12호 개정, 제5조 제15호 및 제16호 신설, 제6조 제10항 제2호 내지 제4호 개정, 제6조 제10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7조 제1항 개정, 제7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8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2호 개정, 제8조 제4항 신설, 제10조 제4호 개정, 제10조 제5호 및 제6호, 제11조 제10항 신설,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조 제8항 제3호 개정, 제12조 제9항 신설, 제13조 제2항 제3호 개정, 제13조 제4항 신설,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6조 제2항 제1호 개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23조 제1항 개정 <2021 제19차 교무위원회>)

[별표1]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별표2]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참석자 명부 <양식준용>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참석자 명부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훈련□, 신규교육·훈련□, 특별안전교육·훈련□, 기타()

NO	학 과 (부 서)	성 명	서 명	NO	학 과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별표3] 연구실안전점검일지 <양식준용>

연구실안전점검일지					
기 관 명		결 재	연구실책임자		
연구실명			양호	불량	미해당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일반 안전	연구실(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흡후드 등) 관리 상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게시				
기계 기구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전기 안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화공 안전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MSDS의 비치				
	화학물질의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여부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소방 안전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 안전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출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생물 안전	생물체(LMO 포함)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보관용기 상태, 보관기록 유지, 보관 장소의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등)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및 고압멸균기 등 살균 장비의 관리 상태				
	생물체(LMO 포함) 취급 연구시설의 관리·운영대장 기록 작성 여부				
	생물체 취급기구(주사기, 핀셋 등), 의료폐기물 등의 별도 폐기 여부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 지시(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 함.					
점검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서명)					

[별표4] 연구실 사고발생시 비상연락 및 긴급체계 <삭제>

[별표5] 사고 상황 통보서 <서식준용>

1. 학교(기관)명 :

2. 소재지 :

3. 사고일시 :

4. 사고장소 :

5. 사고원인 및 경위(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 :

--

6. 사고자(피해자)현황 :

구분	성명 (사고자)	학과명 (연구분야명)	소속신분 (대학생 등)	연락처 (휴대폰)	피해내용
1					
2					
3					
4					

7. 사고처리 대책 :

8. 기타 참고사항 :

9. 업무처리 담당 :

담당자 성명	부서명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